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5
----------	--------

제안년월일 : 2022년 12월 21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제4항, 안 제5조제3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2.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p> <p><신설></p> <p><신설></p>	<p>제4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 ----- ----- -----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p> <p>② 기본전략----- ----- ----- -----.</p> <p>1. (현행과 같음)</p> <p>2. 기본전략----- -----</p> <p>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4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p>	<p>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 ---- 기본전략----- -----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 -----</p>	<p>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야 한다.</p> <p>② <u>이행계획</u>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u>이행계획</u>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p> <p>2. <u>이행계획</u>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p> <p><신 설></p>	<p>-----.</p> <p>② <u>추진계획</u>-----</p> <p>-----.</p> <p>-----.</p> <p>-----.</p> <p>1. <u>추진계획</u>-----</p> <p>-----</p> <p>2. <u>추진계획</u>-----</p> <p>-----</p> <p><신 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③ 시장은 <u>추진계획</u>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u>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을 “(기본전략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계획”을 각각 “기본전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이행계획의 수립)”을 “(추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전략”으로,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이행계획”을 각각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본계획 또는 이행계획”을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속가능발전법</u>」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지속가능발전 <u>기본계획</u> 수립 등</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u>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u>(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u>기본계획</u>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 략)</p> <p>2. <u>기본계획</u>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u>기본계획</u>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u>이행계획</u>(이하 “<u>이행계획</u>”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 「<u>지속가능발전 기본법</u>」-----</p> <p>-----</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지속가능발전 <u>기본전략</u> 수립 등</p> <p>제4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p> <p>----- <u>기본전략</u></p> <p>(이하 “<u>기본전략</u>”이라 한다)을 20년-----</p> <p>-----.</p> <p>② <u>기본전략</u>-----</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기본전략</u>-----</p> <p>-----</p> <p>③ 시장은 <u>기본전략</u>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u>기본전략</u>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u>지속가능발전 기본법</u>」 제17조에 따른 <u>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u>(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 <u>기본전략</u>-----</p> <p>----- <u>추진계획</u>(이하 “<u>추진계획</u>”-----</p> <p>-----.</p>

현행	개정안
<p>② <u>이행계획</u>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u>이행계획</u>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p> <p>2. <u>이행계획</u>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p> <p><신 설></p>	<p>② <u>추진계획</u>----- ----- ----- -----.</p> <p>1. <u>추진계획</u>----- -----</p> <p>2. <u>추진계획</u>----- -----</p> <p>③ <u>시장</u>은 <u>추진계획</u>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u>시장</u>은 최근 2년간의 <u>이행계획</u>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u>시장</u>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u>기본계획</u>과 <u>이행계획</u>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u>시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u>시장</u>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u>이행계획</u>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p>	<p>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 <u>추진계획</u> ----- ----- -----.</p> <p>② ----- ----- <u>기본전략</u>과 <u>추진계획</u>----- ----- -----.</p> <p>③ ----- <u>추진계획</u>-----.</p>
<p>제7조(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 ① 「<u>지속가능발전법</u>」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u>시장</u>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은 별표와 같다.</p> <p>②·③ (생략)</p> <p>④ 위원회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u>기본계획</u> 또는 <u>이행계획</u>의 변경을 수</p>	<p>제7조(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 ① 「<u>지속가능발전 기본법</u>」 제14조제4항 및 제5항-----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 ----- <u>기본전략</u> 또는 <u>추진계획</u>-----</p>

현 행	개 정 안
<p>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p> <p>2. (생 략)</p> <p>⑤·⑥ (생 략)</p> <p>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제6조제2항에 따른 <u>이행계획</u>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9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u>지속가능성보고서</u>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u>지속가능성보고서</u>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제6조제2항에 따른 <u>이행계획</u>의 추진상황</p> <p>2. ~ 4. (생 략)</p> <p>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p>1. <u>기본계획</u> 및 <u>이행계획</u> 수립·변경 심의</p> <p>2. (생 략)</p> <p>3. <u>이행계획</u> 추진 상황 점검</p> <p>4. ~ 6. (생 략)</p>	<p>----- -----</p> <p>2.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추진계획</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 -- <u>지속가능발전 보고서</u>----- -----.</p> <p>② <u>지속가능발전 보고서</u>----- -----.</p> <p>1. ----- <u>추진계획</u>-----</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기본전략</u> 및 <u>추진계획</u> -----</p> <p>2. (현행과 같음)</p> <p>3. <u>추진계획</u> -----</p> <p>4. ~ 6. (현행과 같음)</p>